

운영 위원회 회의록

2023년도 제1차

소망요양원

회의주제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취약시설사이에서의 면회 방향 모색 외 2안건
회의일시	2023.03.22 수요일 (11:00 ~12:00)
회의장소	사랑동 프로그램실
참석자명	강희문(시설의 장), 유현(시설종사자 대표), 임순자(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진구(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정경호(지역주민), 진지순(시설거주자 대표)
회의내용 (회의록)	<p>제 1안건.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취약시설사이에서의 면회 방향 모색</p> <p>가. 제안이유 : 코로나 19로 시설내 면회가 2020년부터 제한되었던 것이 단계별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최근에는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 해제 등 정부방역이 완화되고 있으나 요양원은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어 면회시 면회사전에예약, 면회 전 사전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면회 전·후 환기등의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되나 방역수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자와의 온도 차가 있음.</p> <p>나. 심의사항: ▪ 보호자에게 현 방역수칙 재 안내를 통하여 시설내 감염 사전 방지. (면회 사전예약, 면회전 사전검사, 마스크 착용 등) ▪ 면회 시 자가키트 무상 보급.</p> <p>제 2안건. 시설내 CCTV 의무설치</p> <p>가.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호법’개정안에 의해 2023년 6월 22일부터 요양원은 CCTV를 의무 설치(이를 위반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설치장소: 공동거실, 침실, 현관, 프로그램실, 식당) 해야함. 요양원내 발생하는 문제들의 정확한 사건 요지를 위하여 국민적 요구사항이 법 개정으로 연결되었으나, 종사자 입장에서 ‘업무 감시’로 받아들이며 부정적 시선.</p> <p>나. 심의사항 : ▪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이 5가지로 첫째,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열람하는경우 둘째,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 셋째, 공공기관이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넷째,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섯째, 노인관련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요청하는 경우를 안내하며 종사자 업무 감시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으로 인하여 설치하는 것임을 충분히 안내하여 종사자 대표의 이해 요청. ▪ 종사자 및 입소자 전원 동의(개인정보보호법)</p> <p>제 3안건. 2022년 결산보고</p> <p>특이사항: 2022년 사랑동-소망동 연결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업체선정 및 공사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던 중 보일러 가동시기가 되어 2023년으로 미루어짐. 이로 인하여 세출-시설비 예산액과 결산액 증감액이 큰 차이가 남.</p> <p>※ 직원처우개선</p> <p>법이 개정이 되고, 요양원이기에 어르신들의 안전을 명분으로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종사자 입장에서 일거수 일투족이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 몇몇 종사자분들의 부정적 시선이 있는 것은 맞다.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p>

	<p>설치되는 부분 및 개인정보법 동의하는 부분은 따라가겠지만, 종사자 처우를 위한 개선 부분은 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p> <p>※ 노인학대예방 코로나19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면회가 제한되었다가 풀리는 상황이지만 사람의 기대치가 커서인지 마스크 착용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자가키트를 하고 면회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불편사항이다. 자가키트를 해서 확진여부가 나오는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어린아이들까지 진행을 하고 와야 얼굴을 볼 수 있다는건 개선이 필요할듯 하다. 물론, 정부의 방역지침을 시설에서 따르는게 우선이지만, 민원 제기를 통하여 하루빨리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p>
회의결과 반영내용	<p>제 1안건.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취약시설사이에서의 면회 방향 모색</p> <p>회의 결과: 정부방침을 따라가는것이 맞는것 같다. 다만 자유스런 면회의 활성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전*구 운영위원)</p> <p>제 2안건. 시설내 CCTV 의무설치</p> <p>회의 결과: CCTV 설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입소자,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 사이에 오류가 있는듯 하다. 종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입소자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침실에서는 설치할 수 없지만, 공용공간에서 설치되어 녹화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정*호 운영위원) 보호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시설에서 맞추는 것이 과거에 비해 힘이 든다. 잘못된 부분은 크게 이슈화 되지만, 좋은 부분은 널리 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크기때문이다. 힘든 일이지만 보람된 일을 하고 있기에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임*자 운영위원)</p> <p>제 3안건. 2022년 결산보고</p> <p>회의결과: 사랑동-소망동 연결공사가 올 해는 꼭 진행되어 비,바람을 피해 시설간 이동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유* 운영위원). 시설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르신을 위해서이지만,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종사자분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하더라도 존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의 의견을 절충 할 수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배려하고, 고민하겠음.(강*문 운영위원장)</p>

운영 위원회 회의 서명 목록

소망요양원

주제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취약시설사이에서의 면회 방향 모색 외 2안건		
회의일시	2023.03.22 수요일 (11:00 ~ 12:00)	참석인원	6 명
회의장소	사랑동 프로그램실		

연번	구분	참석자	서명	연번	구분	참석자	서명
1	운영위원	강희문	강희문	2	운영위원	유현	유현
3	운영위원	임순자	임순자	4	운영위원	전진구	전진구
5	운영위원	정경호	정경호	6	운영위원	진지순	진지순